

## 재정보증서에 대한 중요한 안내

귀하의 재정보증서가 규정대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이민비자를 받는데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면접시 재정보증인이 국무성 NVC에 이미 제출한 재정보증서 및 보충서류를 제외한 아래의 서류들을 필요로 합니다.

1. 재정보증인의 최근 3년간의 연방 세금신고서 (IRS 1040, 1040A 또는 1040EZ, 또는 IRS 보관용 사본): 귀하의 재정보증인이 이전에 NVC에 제출한 세금보고서들의 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재정보증인이 연방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아래 2 번을 참조하세요). 귀하의 재정보증인이 이전에 보고한 세금신고서 사본이 없으시면 IRS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재정보증인의 저소득이나 무소득으로 인하여 신고 하지 못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그해의 세금신고에 관한 법조항을 참조하여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하십시오. “나는 학생 또는 가정주부 였습니다”라는 진술서로는 수입 증명과 세금신고에 관한 법조항을 제시하는데 충분치 않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소득 수준이 최저 생계비 기준에 못미치거나, 또는 저소득 및 무소득의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격있는 연대보증인의 I-864와 보충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3.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 밖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미국 납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귀하가 미국 도착 후에도 유용한 보증인의 최근의 지속적인 수입증거(CSI): 증거서류로는 회사 서식용지에 급여액과 직위등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급여와 연금등이 기입된 은행 통장 또는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 은행 통장과 최근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재정보증인의 수입이 중단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자격있는 연대보증인으로 부터 I-864와 보충서류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